

<p>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10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이상 1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p>○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249</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1996. 2. 12 제출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건 명: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 임상이 양호하며 군사시설 및 사격장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건물 일부가 건립된 대지화된 부분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면적증감없이 학교구역을 변경하고자 함.</p> <p>3. 주요요지</p>	의안 번호	249	제출년월일: 1996. 2. 12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249	제출년월일: 1996. 2. 12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시설명</th> <th style="width: 20%;">위치</th> <th style="width: 15%;">면적(m²)</th> <th style="width: 15%;">비고</th> </tr> <tr> <td>기정</td> <td>학교</td> <td>공릉동 26-61 일대</td> <td>146,69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단순구역변경</td> </tr> <tr> <td>변경</td> <td>"</td> <td>"</td> <td>146,695</td> </tr> </table>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학교	공릉동 26-61 일대	146,695	단순구역변경	변경	"	"	146,695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학교	공릉동 26-61 일대	146,695	단순구역변경																	
변경	"	"	146,695																		
<p>4. 기타사항</p> <p>○ 도시계획사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학교</p> <p>○ 학교기준면적 검토</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²)</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시설기준 학생 정원</th> <th colspan="3">교 지</th> <th colspan="3">교 사</th> </tr> <tr> <th>기 준</th> <th>보 유</th> <th>보유율</th> <th>기 준</th> <th>보 유</th> <th>보유율</th> </tr> <tr> <td>3,205인</td> <td>106,679</td> <td>146,695</td> <td>137%</td> <td>42,844</td> <td>27,994</td> <td>65%</td> </tr> </table>		시설기준 학생 정원	교 지			교 사			기 준	보 유	보유율	기 준	보 유	보유율	3,205인	106,679	146,695	137%	42,844	27,994	65%
시설기준 학생 정원	교 지			교 사																	
	기 준	보 유	보유율	기 준	보 유	보유율															
3,205인	106,679	146,695	137%	42,844	27,994	65%															
<p>○ 변경부분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삼육학원</p> <p>○ 주민의견청취</p> <p>—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없음</p> <p>• 공람기간: '95.11.11~11.24</p> <p>• 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p> <p>.....</p> <p>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274</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1996. 2. 15 제출자: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의안 번호	274	제출년월일: 1996. 2. 15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p>—'77.7.9(건설부고시 제138호) 공원재정비 계획에 의거 서초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공원용지로 계속 관리되어 왔으며, '79.7.7(서울시고시 제307호) 지적 승인 고시도면 작도시</p> <p>• 공원내부임야도(축척 1/3,000)와 공원 외부 구획정리 환지도(축척 1/1,200)를 같은 축척으로 접합하는 과정에서</p> <p>• 환지도를 공원내부 임야도 방향으로 일부 겹치게 잘못 접합하여</p> <p>• 겹친부분 임야도는 그려지지 않고 환지도 부분은 지적과 현황이 어긋나게 잘못 그려진 도면으로 지적고시되어 일부지역이 공원용지내에 그려지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어</p> <p>—'93.5.20(서초구고시 제17호) 서초구에서 그려지지 않은 지적고시 부분에 대한 지적 경정고시를 하였으나</p> <p>—'95.9.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초동 산</p>																	
의안 번호	274	제출년월일: 1996. 2. 15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p>160-51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거부 처분 취소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러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 지적고시 도면의 지적고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p>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93.5.20. 서초구고시 제17호로 행한 지적경정고시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음.</p> <p>-그러므로 '93.5.20. 지적경정고시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p> <p>○ 서초구 서초동 1497-5 및 1493-4 일대 임상이 양호한 지역(4,999.5m²)을 공원으로 추가지정하여 서초근린공원에 편입코자 함.</p> <p>3. 주요요지</p>																			
<p>○ 입안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공원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변경전</th> <th>변경후</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 결정</td> <td>서초근린공원</td> <td>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td> <td>532,331.7</td> <td>537,331.2</td> <td>(증) 4,999.5</td> <td>지적고시착오 및 임상 양호지역 공원 추가결정</td> </tr> </tbody> </table>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 결정	서초근린공원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	532,331.7	537,331.2	(증) 4,999.5	지적고시착오 및 임상 양호지역 공원 추가결정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 결정	서초근린공원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	532,331.7	537,331.2	(증) 4,999.5	지적고시착오 및 임상 양호지역 공원 추가결정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의견 추가 공원 요청지 중 남측은 공원과 주택가 사이 도로의 활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5. 참고사항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없음</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557</td> <td style="width:30%;">제출년월일 : 1996. 9. 20</td> <td style="width:40%;">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의안번호	557	제출년월일 : 1996. 9. 20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 ○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83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북한산자연공원 인접지로 '73년 주택개량개발구역 결정후 통일로변 가시권정비 및 고지대 녹화계획에 따라 녹화된 지역이나 ○ '88~'89년 재개발구역에서 동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개발로부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결정코자 함.</p>															
의안번호	557	제출년월일 : 1996. 9. 20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시설의세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 결정</td> <td>공원</td> <td>북한산자연공원</td> <td>서대문·은평·도봉·성북·종로구 일대</td> <td>29,593,484</td> <td>29,668,548</td> <td>(증) 75,064</td> <td>서대문구 홍은동 산 1-183 일대 임상 양호지역 공원결정</td> </tr> </tbody> </table>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개발제한구역</p>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결정	공원	북한산자연공원	서대문·은평·도봉·성북·종로구 일대	29,593,484	29,668,548	(증) 75,064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83 일대 임상 양호지역 공원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결정	공원	북한산자연공원	서대문·은평·도봉·성북·종로구 일대	29,593,484	29,668,548	(증) 75,064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83 일대 임상 양호지역 공원결정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전 없음</p>	<p>5. 기타 ○ '74.12.1 주택개량개발구역 결정(홍은3·4·5</p>																			

<p style="text-align: center;">구역)</p> <p>○ '74~'76 통일로변 가시권정비 및 고지대 녹화계획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물철거 및 녹화</p> <p>○ '88~'89 주택개발재개발구역 변경(일부해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재개발구역에서 녹화된 지역해제</p> <p>○ '96.7.4 도시계획안 공람공고</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p> <p>○ 공원편입 토지현황(166필지 75,06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국·공유지: 137필지 60,163㎡</p> <p>사유지: 29필지 14,901㎡</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50%;">의안번호</td> <td style="width: 50%;">585</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1996. 10. 17 제출자: 서울특별시장</p> <p>1. 개요</p>	의안번호	585													
의안번호	58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치</th> <th rowspan="2">용도지구 지정</th> <th colspan="3">기 심 의 내 용</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면적(㎡)</th> <th>당 초</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서구 화곡동 342, 343, 897, 900, 937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설계지구 (218,487㎡ 기존 상업지역 185,250㎡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37</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주거 지 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상업 지 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정 지구중심</td> </tr> </tbody> </table>		위 치	용도지구 지정	기 심 의 내 용			비 고	면적(㎡)	당 초	변 경	강서구 화곡동 342, 343, 897, 900, 937 일대	도시설계지구 (218,487㎡ 기존 상업지역 185,250㎡포함)	33,237	일반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신 정 지구중심
위 치	용도지구 지정			기 심 의 내 용				비 고								
		면적(㎡)	당 초	변 경												
강서구 화곡동 342, 343, 897, 900, 937 일대	도시설계지구 (218,487㎡ 기존 상업지역 185,250㎡포함)	33,237	일반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신 정 지구중심											
<p>2.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p> <p>○ 강서구 신정지구중심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동의되었으며,</p> <p>○ '96.4.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정지구중심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으나, 기존 상업지역(185,250㎡)을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토록 수정가결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p> <p>3. 참고사항</p> <p>○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p>	<p>○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p> <p>○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서울특별시</p>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이견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50%;">의안번호</td> <td style="width: 50%;">586</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1996. 10. 17 제출자: 서울특별시장</p> <p>1. 개요</p>	의안번호	586													
의안번호	58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2">용도지역변경</th> <th rowspan="2">면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당 초</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연녹지 지 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종 일반 주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745</td> <td></td> </tr> </tbody> </table>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 역	1종 일반 주거지역	745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 역	1종 일반 주거지역	745													
<p>2.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p> <p>○ 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는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택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존치된 토지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p> <p>3. 참고사항</p> <p>○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자연녹지지역</p> <p>○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p>	<p>○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서울특별시</p>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이견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50%;">의안번호</td> <td style="width: 50%;">588</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1996. 10. 17 제출자: 서울특별시장</p>	의안번호	588													
의안번호	588															

<p>1. 건 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p> <p>2. 주요요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2">용도지역변경</th> <th rowspan="2">면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당 초</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서초구 서초동 1649번지 일대</td> <td>전용주거 지 역</td> <td>2중 일반 주거지역</td> <td>10,840</td> <td>서울교대 주 변</td> </tr> </tbody> </table> <p>3.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p> <p>○ 본 지역은 우면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사임당길 주변은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전용주거지역 분위기와 상충되며 상업·업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2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p> <p>4. 참고사항</p> <p>○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 전용녹지지역 ○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의견 없음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 서울특별시</p> <p>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p> <p>.....</p> <p>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15%;">의 안 번호</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607</td> <td style="width:30%;">제출년월일 : 1996. 10. 29</td> <td style="width:40%;">계 출 자 : 서울특별시</td> </tr> </table> <p>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시설의 세 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 결정</td> <td>공원</td> <td>공산근린 공 원</td> <td>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td> <td>132,704</td> <td>138,119</td> <td>증) 5,415</td> <td></td> </tr> </tbody> </table> <p>*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p>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p> <p>○ 공원확보 차원에서 공원결정에는 이견 없음(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평탄지임을 감안하여 공원내 설치가능 시설인 문화체육시설 등의 개발이 바람직하며</p>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서초구 서초동 1649번지 일대	전용주거 지 역	2중 일반 주거지역	10,840	서울교대 주 변	의 안 번호	607	제출년월일 : 1996. 10. 29	계 출 자 : 서울특별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결정	공원	공산근린 공 원	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	132,704	138,119	증) 5,415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p> <p>○ 공산근린공원으로 재결정코자 하는 강서구 마곡동 9번지 일대 면적 4,371㎡는 -'77.5.27. 가양제2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77.7.9. 공원재정비계획에 의거 동 공원과 가양근린공원 기타 임상양호지를 포함하여 가양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되었으나</p> <p>-'79.4.24. 공원지적승인고시시 동 토지가 누락된 상태로 지적고시되었는바, 동 토지는 공원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공원으로 재결정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p> <p>* '94.1.3. 가양근린공원이 공산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p> <p>○ 아울러 동 공원에 접하고 있고 국유지인 1,044㎡도 동 공원으로 추가 결정코자 함.</p> <p>5. 참고사항</p> <p>○ '71. 8. 6 : 가양공원(건설부고시 제465호) ○ '77. 5.27 : 가양제2근린공원결정(건설부고시 제89호)</p>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서초구 서초동 1649번지 일대	전용주거 지 역	2중 일반 주거지역	10,840	서울교대 주 변																																
의 안 번호	607	제출년월일 : 1996. 10. 29	계 출 자 : 서울특별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결정	공원	공산근린 공 원	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	132,704	138,119	증) 5,415																														

<p>○ '77. 7. 9 : 가양제2근린공원을 편입하여 가양근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 138호)</p> <p>○ '79. 4.24 : 지적승인고시(서울시고시 제165호)</p> <p>○ '94. 1. 3 : 궁산근린공원 명칭 변경</p> <p>○ '96. 7.15 : 궁산근린공원 일부 실효고시</p> <p>○ '96. 7.16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p> <hr/> <p>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609</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의안번호	609	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p> <p>○ 염창근린공원내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공원을 양분케 되어 공원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4.8.11. 동 도로를 폐지한 바 있어</p> <p>○ 대체도로인 폭 15m, 연장 475m를 결정, 지역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p> <p>○ 결정코자 하는 도로와 중복되는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의안번호	609	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3. 도시계획시설(공원 : 염창근린공원) 변경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시설의세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변경</td> <td>공원</td> <td>근린공원</td> <td>강서구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td> <td>112,070</td> <td>-5,540</td> <td>106,530</td> <td>해제 : 6,097㎡ 추가 : 557㎡</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	112,070	-5,540	106,530	해제 : 6,097㎡ 추가 : 557㎡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	112,070	-5,540	106,530	해제 : 6,097㎡ 추가 : 557㎡													
<p>○ 도시계획사항</p> <p>· 준공업지역, 공원</p> <p>4. 참고사항</p> <p>○ 도시계획(안) 공람공고('96.7.16~8.1) 주민 의견 : 없음</p> <p>○ 가양택지개발 사업 완료 : '96.7.3</p> <p>○ 도로신설 : B=15m, L=475m</p> <hr/> <p>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613</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의안번호	613	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1. 건 명 :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p> <p>○ 본 지역은 6호선 수색역 주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수색지구중심임.</p> <p>○ 기 결정된 수색로 남측과 북측 상세계획구역과의 조화있는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 결정코자 함.</p> <p>3. 주요요지</p>																
의안번호	613	제출년월일 : 1996. 10. 2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 결정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구역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변경전</th> <th>변경후</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결정</td> <td>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td> <td>은평구 수색동 32, 증산동 222 일대</td> <td>85,000</td> <td>126,000</td> <td>(증) 41,000</td> <td>수색로 북측, 지하철 6호선 수색역 서측 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결정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32, 증산동 222 일대	85,000	126,000	(증) 41,000	수색로 북측, 지하철 6호선 수색역 서측 포함.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결정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32, 증산동 222 일대	85,000	126,000	(증) 41,000	수색로 북측, 지하철 6호선 수색역 서측 포함.														
<p>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p> <p>이견 없음</p> <p>5. 참고사항</p>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p>	<p>○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없음</p> <hr/> <p>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의안 번호	645	제출년월일 : 1996. 11. 26 제출자 : 서울특별시	기존 상권과 연계 개발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심주차난 을 완화하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함. 3. 주요 요지 ○ 의견청취 대상시설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2. 제안사유 ○ 관악로 지하에 지하공간을 개발, 지하공 공보도·상가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도로	지하도로	35	310	봉천동 1570-1	봉천동 862-1	관악로 지하공간
신설	"	"	40	420	봉천동 861-6	봉천동 33-8	(지하1층)
○ 기타 관련시설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주차장)	봉천동 861-11 ~봉천동 33-8	17,160	관악로 지하공간 (지하 2층)		
○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지구('96.7.5 지정), 주차장정비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이견 없음 5. 참고사항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 지하도로 : 도로 등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 출입시설 등 지하공간 이용시설을 말 함				다가오는 정측년 새해에도 同僚議員 여러분 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오는 30일 백남빌딩에서는 부부동 반해서 同僚議員 전원 우리 송년회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에 배 부해 드린 후반기 院 구성을 위한 우리 議 員님들의 지원부서를 작성하셔서 27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대 議會 後半期 各 常任委員會 구성을 위해서 제91회 臨時會를 1997년 1월 13일과 1월 14일 2일간 개최하기로 運營委員會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59分 散會)			
○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제4대 서울시議會 개원이후 定期會 2회, 臨 時會 14회, 전반기 議會의 의정활동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현안들을 원만하 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同僚議員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천백만 市民의 복 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同僚議員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出席議員 138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信浩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